

의료법인 서울척병원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는 성북구 관내 의료취약계층 인공관절 무료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“갑” 은 “을” 을 통해 추천받은 의료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인공관절 수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 및 범위)

1. 자 격 :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65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1,2종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저소득노인(소득 하위 40%)
2. 수술범위 : 무릎 퇴행성 관절염
3. 지원범위 : 인공관절수술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·수술비를 포함한 입원기간 동안의 본인부담금 전액(비급여비용 포함) 무료 공동간병인 서비스(수술3일부터)

제3조(지원기간)

협약체결일로부터 “갑” 또는 “을” 중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속 사업으로 한다.

제4조(협력사항)

1. “을” 은 무료 관절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를 “갑” 에게 추천한다.
2. “을” 은 “갑” 이 추천한 취약계층 관절 수술대상자에 대한 사전검진과 수술비·입원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.
3. “갑” 은 사전에 “을” 과 인원수 및 추천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.

제5조(환자추천방법)

1. “을” 은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면담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“갑”에게 이메일, 우편 등으로 제출한다.
 - 가. 1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(원본)
 - 나. 수술비 지원 추천서
 - 다. 의료급여증명서 1부
2. 필요한 경우 “갑” 은 “을”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결과 통보 등)

1. “갑” 은 무료수술 지원을 결정한 자를 대해 이메일, 유선 등으로 “을”에게 통보한다.
2. “갑” 은 수술비 지원 결과 내용을 “을”에게 통보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)

1. 본 협약은 “갑” 과 “을”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.
2. “갑” 은 “을” 이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.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의료 관련 법규 위배 등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사항)

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준수)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쌍방이 서명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, 본 협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2015. 9. .

“갑” : 서울척병원

“을” :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김 동 윤 (인)

김 영 배 (인)

